

특 허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21허5136 권리범위확인(실)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유한) 대아

담당변리사 유재영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자 사내이사 D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진환, 서경호

변 론 종 결 2023. 3. 23.

판 결 선 고 2023. 5. 2.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1. 7. 20. 2020당380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 제3호증)

- 1) 발명의 명칭: 피난구조용 완강기 거치대
-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6. 1. 25./ 2017. 11. 23./ 제20-0485117호
- 3) 청구범위

【청구항 1】 비상시 고층 건물의 창(W)으로 피난자를 이동시킨 후 하강시키는 완강기(2)가 설치되는 거치대(1)에 있어서, 상기 창(W)의 일측 벽면에 고정되는 고정부(10)와; 상기 고정부(10)의 전단부에 연결되어 수평방향으로 회전되는 수평회전부(20)와; 상기 수평회전부(20)의 전단부에 연결되어 수직방향으로 회전되는 수직회전부(30)로 구성되고; 상기 수평회전부(20)는 상기 수직회전부(30)가 연결되어 수평으로 회전되는 봉형상의 수평로드(21)와, 상기 고정부(10)의 전단부에 연결되며 상기 수평로드(21)의 상하면을 관통하는 수평힌지(221)가 구비되어 수평방향으로 회전되도록 다수회 절곡된 판형상의 수평연결편(22)으로 이루어지고; 상기 수직회전부(30)는 상기 완강기(2)가 연결되어 수직방향으로 회전되는 봉형상의 수직로드(31)와, 상기 수평로드(21)의 일단부에 연결되며 상기 수직로드(31)의 전후부를 관통하는 수직힌지(321)가 구비되어 수직방향으로 회전되도록 다수회 절곡된 판형상의 수직연결편(32)으로 이루어지며; 상기 수직로드(31)의 일면에는 상기 수직힌지(321)가 관통되며 상기 수직로드(31)가 일방향으로 이

동되며 회전되도록 장공형상으로 천공된 회전장공(37)이 형성되고; 상기 수직로드(31)의 일면에는 상기 수직로드(31)가 상기 수직연결편(32)의 바닥면에 지지되도록 일측 방향으로 돌출된 지지돌기(36)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난구조용 완강기 거치대 (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하고, 다른 청구항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평연결편(22)에는 내측으로 요입된 다수개의 수평고정공(23)이 형성되고; 상기 수평로드(21)의 일면에는 상기 수평고정공(23)에 삽입되어 상기 수평로드(21)의 회전이 단속되도록 외측방향으로 돌출된 수평고정돌기(24)가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난구조용 완강기 거치대.

【청구항 3】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연결편(32)의 테두리에는 내측으로 요입된 다수개의 수직고정공(33)이 형성되고; 상기 수직로드(31)의 일면에는 상기 수직고정공(33)에 삽입되어 상기 수직로드(31)의 회전이 단속되도록 외측방향으로 돌출된 수직고정돌기(34)가 형성되며; 상기 수직고정공(33)의 내측에는 상기 수직고정돌기(34)가 외측으로 이탈되는 것이 차단되도록 일방향으로 요입된 걸림홈(35)이 형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난구조용 완강기 거치대.

【청구항 4】 삭제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연결편(32)의 바닥면에는 하부방향으로 돌출된 연결편지지돌기(361)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난구조용 완강기 거치대.

나. 확인대상고안(갑 제2호증)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와 같고, 확인대상고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¹⁾

1) 굵은 글씨체와 밑줄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부가한 것이다.

2.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1)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지는 다음과 같다.

창(W)의 일측 벽면에 고정되는 고정부(100)와; 상기 고정부(100)의 전단부에 연결되어 수평방향으로 회전되는 수평회전부(200)와; 상기 수평회전부(200)의 전단부에 연결되어 수직방향으로 회전되는 수직회전부(300)와; 상기 수직회전부(300)가 연결되어 수평으로 회전되는 봉형상의 수평로드(210)와, 상기 고정부(100)의 전단부에 연결되며 상기 수평로드(210)의 상하면을 관통하는 수평힌지(220a)가 구비되어 수평방향으로 회전되도록 다수회 절곡된 판형상의 수평연결편(220)으로 이루어진 수평회전부(200)와; 상기 완강기(2)가 연결되어 수직방향으로 회전되는 봉형상의 수직로드(310)와, 상기 수평로드(210)의 일단부에 연결되며 상기 수직로드(310)의 전후부를 관통하는 수직힌지(320a)가 구비되어 수직방향으로 회전되도록 다수회 절곡된 판형상의 수직연결편(320)으로 이루어진 수직회전부(300)와; 상기 수직로드(310)상 일면에는 상기 수직힌지(320a)가 관통되되 상기 수직로드(310)가 일방향으로 이동되며 회전되도록 장공형상으로 천공된 회전장공(370)과; 상기 **수직연결편(320)의 바닥면에 상기 수직로드(310)의 일면이 지지되도록 하부방향으로 돌출된 지지돌기(360)**와; 상기 수평연결편(220)에는 내측으로 요입된 다수개의 수평고정공(230)이 형성되고; 상기 수평로드(210)의 일면에는 상기 수평고정공(230)에 삽입되어 상기 수평로드(210)의 회전이 단속되도록 외측방향으로 돌출된 수평고정돌기(240)와; 상기 수직연결편(320)의 테두리에는 내측으로 요입된 다수개의 수직고정공(330)이 형성되고; 상기 수직로드(310)의 일면에는 상기 수직고정공(330)에 삽입되어 상기 수직로드(310)의 회전이 단속되도록 외측방향으로 돌출된 수직고정돌기(340)가 형성되며; 상기 수직고정공(330)의 내측에는 상기 수직고정돌기(340)가 외측으로 이탈되는 것이 차단되도록 일방향으로 요입된 걸림홈(350)과; 상기 **수직연결편(320)의 바닥면에는 연결편지지돌기(3610)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확인대상고안의 작용

확인대상고안은 수직회전부(300)가 일측 방향으로 회전된 후 상기 수평회전부(200)가 상기 창(W)의 내부로 회전되면서 상기 수직로드(310)를 건물의 외측으로 이동시키고 이후 상기 수직로드(310)에 설치된 완강기를 통하여 피난자를 하강시키며, 수평고정공(230)에 수평고정돌기(240)를 삽입하고 수직고정공(330)에 수직고정돌기(340)를 삽입하여 일방향으로

회전된 수평로드(210) 및 수직로드(310)가 이동된 위치에서 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수직로드(310)의 일단부에 지지돌기(360)를 구비하여 사용자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게 된다.

다. 원고 실시제품

아래 사진들은, 원고가 2022. 9. 22.자 변론에서 제출한 원고 실시제품의 사진과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원고 실시제품의 사진(을 제4호증)이다. 해당 사진들이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고안의 기술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20. 12. 1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확인대상고안에 대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청구를 2020당3801호로 심리한 다음, 2021. 7. 20.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균등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 실시제품은 확인대상고안과 달리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으로부터 돌출된 지지돌기 또는 연결편지지돌기²⁾와 같은 구성이 없으므로 확인대상고안과 다르다.³⁾ 원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설령, 원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이 다른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나. 피고

1) 원고는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다.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기재된 "수직로드의 일단부에 지지돌기를 구비하여" 부분은 오기에 불과하다.

2)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균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피고는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수직연결편(320)의 바닥면에 상기 수직로드(310)의 일면이 지지되도록 하부방향으로 돌출된 지지돌기(360)와 '수직연결편(320)의 바닥면에는 연결편지지돌기(3610)가 구비'된다고 기재함으로써 지지돌기(360)와 연결편지지돌기(3610)를 별개 식별번호로 특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지돌기(360)와 연결편지지돌기(3610)는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에서 하부방향으로 돌출되어 수직로드를 지지하는 같은 구성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해당 구성을 '수직로드의 일단부에 구비되는 지지돌기'와 구분하기 위하여 '연결편지지돌기'로 통일하여 호칭한다.

3) 원고가 특허심판원 심판청구의 심리단계에서 심리종결일까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실시주장고안과 확인대상고안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의 명확한 주장이 없더라도 의심이 있을 때에는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밝혀보아야 할 사항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후656 판결 등 참조).

나. 확인대상고안과 원고 실시제품의 동일성 인정 여부

1) 확인대상고안의 쟁점구성 특정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중 쟁점이 되는 부분은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에 상기 수직로드의 일면이 지지되도록 하부방향으로 돌출된 연결편지지돌기를 구비하고, 수직로드의 일단부에 지지돌기를 구비하여 사용자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으로, 쟁점구성은 ①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에서 하부방향으로 돌출된 연결편지지돌기와 ② 수직로드의 일단부에 구비된 지지돌기로 특정된다.

2) 쟁점구성 1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확인대상고안과 함께 제시한 사진에서는 원고 실시제품의 연결편지지돌기가 수직연결편의 측벽에 용접 등으로 결합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해당 연결편지지돌기가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에서 돌출된 구조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가 2022. 9. 22.자 변론에서 제시한 사진에 의하면, 원고 실시제품의 연결편지지돌기 양측 단부가 수직연결편의 바닥면과도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 실시제품의 연결편지지돌기가 그 양측 단부는 물론 중간 부분도 수직연결편의 바닥면과 결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실시제품의 연결편지지돌기 역시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에서 하부방향으로 돌출된 구성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구성 1에 있어 원고 실시제품과 확인대상고안은 같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실시제품의 연결편지지돌기는 수직로드의 회전반경

을 제한하는 '걸림판' 기능만 하고, 수직로드의 일면이 연결편지지돌기에 닿거나 지지되지 않으므로, 확인대상고안의 연결편지지돌기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 실시제품의 연결편지지돌기와 수직로드 사이에 미세한 간극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미세한 간극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 실시제품의 연결편지지돌기 역시 확인대상고안의 연결편지지돌기와 마찬가지로 수직로드를 지지하기 위하여 구비된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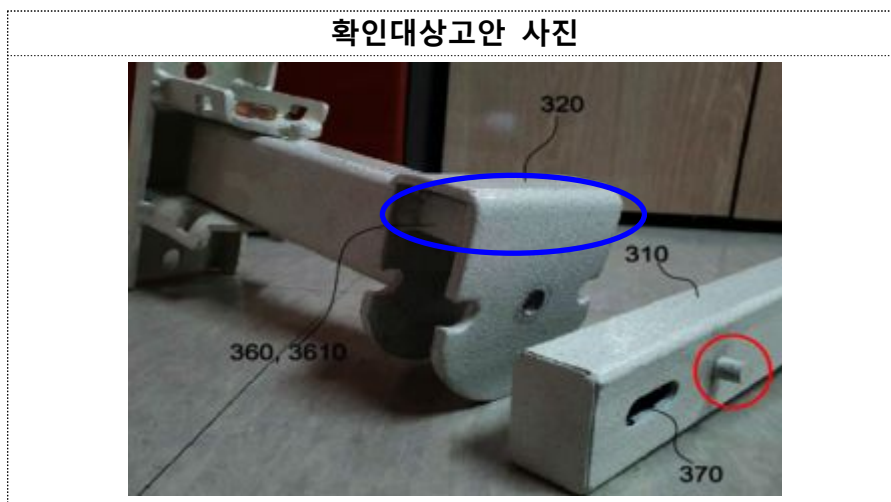


(1) 원고 실시제품이나 확인대상고안 모두 평상시에는 수직방향으로 내려가 있는 수직로드를 완강기 사용시에 수평방향으로 회전하여 들어 올린 뒤, 해당 수직로드의 단부를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에 형성되어 있는 연결편지지돌기 하부로 밀어 넣어 위치시키는 작동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경우 수직로드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서는 수직로드의 상부와 연결편지지돌기의 하부 사이에 어느 정도 간극을 둘 수밖에 없다.

(2) 비록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에 형성된 연결편지지돌기와 수직로드 사이에 미세한 간극이 형성되어 있더라도, 완강기 사용으로 수직로드의 연결편지지돌기 반대 측 단부에 강한 무게와 충격이 가해져 수직로드의 수평상태에 변형이 생길 경우, 수직로드의 연결편지지돌기 측 단부가 수직연결편의 연결편지지돌기에 접촉되어 수직로드를 지지하

게 되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3) 만일 원고 실시제품의 연결편지지돌기가 수직로드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의 중량은 온전히 아래 사진 붉은 색 원 안의 수직고정돌기에만 실리게 되는데, 수직고정돌기의 형상을 고려하면 과연 이로써 사용자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그와 같은 구성을 취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쟁점구성 2에 관한 판단

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고안의 특징은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후3478 판결 등 참조), 확인대상발명이 어떠한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파악할 때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를 기준으로 하되, 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부분은 '1. 확인대상고안의 목적, 2.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3. 확인대상고안의 효과'로 항목이 나뉘어 있다. 나아가 '2.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항목

중 '(2) 확인대상고안의 작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2) 확인대상고안의 작용'도 확인 대상발명의 '설명서'의 일부를 이루고, '(2) 확인대상고안의 작용'에는 '수직로드의 일단부에 지지돌기를 구비하여'가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 실시제품의 수직로드에는 해당 기재와 달리 지지돌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쟁점구성 2에 있어 원고 실시제품과 확인대상고안은 같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기재된 "수직로드의 일단부에 지지돌기를 구비하여"라는 기재는 명백한 오기이므로 해당 기재 없이 확인대상고안에 대한 심판 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특허법원의 심결취소소송은 심결이라는 행정처분의 당부에 관한 행정소송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심결의 위법성 여부가 소송물이 되고 그 판단의 기준시점은 심결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심결의 심판대상인 확인대상고안도 심결시에 확정된다. 따라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 절차에서 확인대상고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확인대상고안의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다거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것이 허용되나, 그러한 범위를 넘어 동일성이 없는 다른 발명으로 소송물을 변경하는 것은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심리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필요적 전치주의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해당 기재는 단순히 한 두 글자의 오자나 탈자가 생긴 것이 아니라 총 18자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한 오·탈자의 수준을 넘어선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오기라 볼 경우, 오기가 생기게 된 이유가 밝혀지거나 명백하여야 하는데, 확인대상고안을 특정한 피고는 해당 기재를 오기라고만 주장할 뿐 오기가 발생하게 된 이유 등을 명확히 밝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해당 기재는 이 사건 등록고안에서 사용된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3)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에 하부방향으로 돌출된 연결편지지돌기'에 더하여 '수직로드의 일단부에 지지돌기'를 형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로 인하여 수직로드를 수평방향으로 안전하게 지지하는 확인대상고안의 작용, 효과가 저해되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4) 더욱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상기 수직로드의 일면에 상기 수직로드가 상기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에 지지되도록 일측 방향으로 돌출된 지지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제5항 고안은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에는 하부방향으로 돌출된 연결편지지돌기가 구비된 것'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5항 고안은 '수직로드의 일면에 일측 방향으로 돌출된 지지돌기'와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에 하부방향으로 돌출된 연결편지지돌기'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범위 해석상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에 하부방향으로 돌출된 연결편지지돌기'에 더하여 '수직로드의 일단부에 지지돌기'를 구비하는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제5항 고안의 구성에도 대응되는 것이다.

(5) 따라서 '수직로드의 일단부에 지지돌기를 구비하는'이라는 기재가 단지 확인대상고안 설명서의 '(2) 확인대상고안의 작용'에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백한 오기라고 단정할 수 없고, 확인대상고안은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에 하부방향으로 돌출된 지지돌기' 및 '수직로드의 일단부에 구비된 지지돌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검토결과의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특정한 확인대상고안과 원고 실시제품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심판청구인인 원고가 확인대상고안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⁴⁾

4. 결론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임경옥

 판사 윤재필

4) 설령,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에 기재된 '수직로드의 일단부에 지지돌기를 구비하여'라는 기재가 오키라고 보더라도, 확인대상고안의 도면에는 이에 해당하는 구성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이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판절차에서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와 도면을 일치하도록 보정할 필요가 있다.

【별지】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

○ **확인대상고안의 명칭**

완강기 지지대

○ **확인대상고안의 설명**

1. 확인대상고안의 목적

수직연결편의 바닥면에 수직로드와 밀착되는 연결편지지돌기를 구비하여 창의 외부로 이동된 수직로드에 피난자가 매달릴 경우 그 하중을 견디며 평행한 상태로 유지시키며 흔들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대상고안의 구성

(1)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요지는 다음과 같다.

창(W)의 일측 벽면에 고정되는 고정부(100)와; 상기 고정부(100)의 전단부에 연결되어 수평방향으로 회전되는 수평회전부(200)와; 상기 수평회전부(200)의 전단부에 연결되어 수직방향으로 회전되는 수직회전부(300)와;

상기 수직회전부(300)가 연결되어 수평으로 회전되는 봉형상의 수평로드(210)와, 상기 고정부(100)의 전단부에 연결되며 상기 수평로드(210)의 상하면을 관통하는 수평힌지(220a)가 구비되어 수평방향으로 회전되도록 다수회 절곡된 판형상의 수평연결편(220)으로 이루어진 수평회전부(200)와;

상기 완강기(2)가 연결되어 수직방향으로 회전되는 봉형상의 수직로드(310)와, 상기 수평로드(210)의 일단부에 연결되며 상기 수직로드(310)의 전후부를 관통하는 수직힌지(320a)가 구비되어 수직방향으로 회전되도록 다수회 절곡된 판형상의 수직연결편

(320)으로 이루어진 수직회전부(300)와;

상기 수직로드(310)상 일면에는 상기 수직힌지(320a)가 관통되되 상기 수직로드(310)가 일방향으로 이동되며 회전되도록 장공형상으로 천공된 회전장공(370)과;

상기 수직연결편(320)의 바닥면에 상기 수직로드(310)의 일면이 지지되도록 하부 방향으로 돌출된 지지돌기(360)와;

상기 수평연결편(220)에는 내측으로 요입된 다수개의 수평고정공(230)이 형성되고; 상기 수평로드(210)의 일면에는 상기 수평고정공(230)에 삽입되어 상기 수평로드(210)의 회전이 단속되도록 외측방향으로 돌출된 수평고정돌기(240)와;

상기 수직연결편(320)의 테두리에는 내측으로 요입된 다수개의 수직고정공(330)이 형성되고; 상기 수직로드(310)의 일면에는 상기 수직고정공(330)에 삽입되어 상기 수직로드(310)의 회전이 단속되도록 외측방향으로 돌출된 수직고정돌기(340)가 형성되며; 상기 수직고정공(330)의 내측에는 상기 수직고정돌기(340)가 외측으로 이탈되는 것이 차단되도록 일방향으로 요입된 걸림홈(350)과;

상기 수직연결편(320)의 바닥면에는 연결편지지돌기(3610)가 구비된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확인대상고안의 작용

확인대상고안은 수직회전부(300)가 일측 방향으로 회전된 후 상기 수평회전부(200)가 상기 창(W)의 내부로 회전되면서 상기 수직로드(310)를 건물의 외측으로 이동시키고 이후 상기 수직로드(310)에 설치된 완강기를 통하여 피난자를 하강시키며, 수평고정공(230)에 수평고정돌기(240)를 삽입하고 수직고정공(330)에 수직고정돌기(340)를 삽입하여 일방향으로 회전된 수평로드(210) 및 수직로드(310)가 이동된 위치에서 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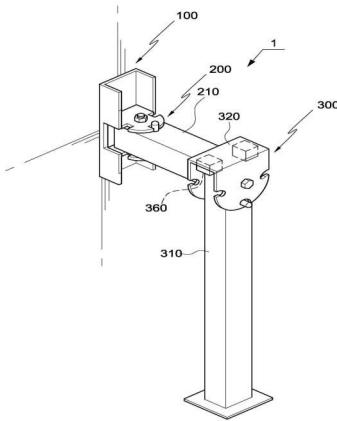
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수직로드(310)의 일단부에 지지돌기(360)를 구비하여 사용자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게 된다.

3. 확인대상고안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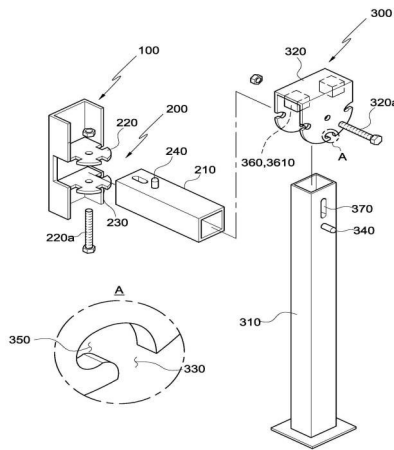
확인대상고안은 고층 건물의 창으로 피난자를 이동시킨 후 하강시키는 완강기에 2축으로 회전되는 거치대를 구비하여 정상시에는 벽면에 밀착시켜 공간 활용에 대한 불편함을 방지하고, 비상시에는 용이하게 창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으며, 수직회전부의 수직로드는 비상시 일측 방향으로 들어 올려 사용하는 "∩"형상의 수직연결편을 구비하여 사용자의 머리와 부딪혀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수직로드를 지지하는 지지돌기를 총 3지점에 구비하여 사용자의 하강을 보다 안전하게 수행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 확인대상고안의 주요도면 및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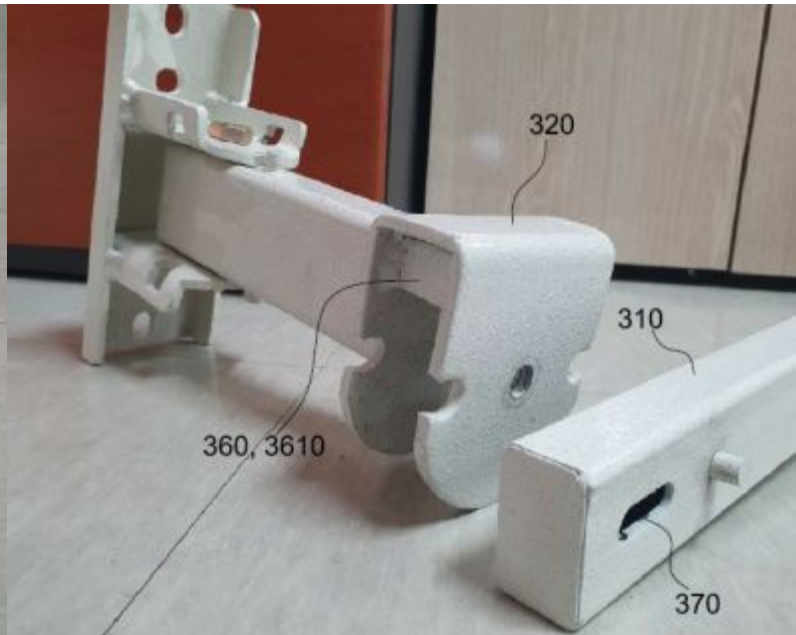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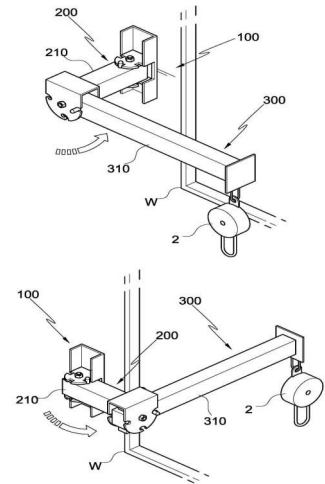
도면 1



도면 2



도면 3



100: 고정부, 200: 수평회전부, 210: 수평로드, 220: 수평연결편, 230: 수평고정공, 240: 수평고정돌기, 220a: 수평힌지, 300: 수직회전부, 310: 수직로드, 320: 수직연결편, 320a: 수직힌지, 330: 수직고정공, 340: 수직고정돌기, 350: 걸림홈, 360: 지지돌기, 370: 회전장공, 3610: 연결편지지돌기